

한·중 간도영유권문제의 고찰

盧 泳 墩
(인천대 법대 교수)

1. 서 론
2. 간도에 대한 몇 가지 기초지식
3. 백두산정계비 이전의 조·청 국경
4. 백두산정계비의 설치
5. 조·청 간도영유권분쟁의 발단과 전개
6. 일본의 간도문제 개입과 청·일 간도협약의 체결
7. 「청·일 간도협약」의 무효성
8. 결 론

1. 서 론

중국의 소위 '동북공정(동북공정)¹⁾'을 계기로 국내에서는 간도영유권문제

1) 동북공정(東北工程)은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을 줄여서 부르는 말로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계획으로 중국 사회과학원 소속

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 동안 간도영유권문제에 대하여는 일부 학자들에 의하여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정부(정권과 해당 부처)는 이에 대하여 매우 무관심하였다. 그러던 중 2003년 한국내에 중국이 동북공정이란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 일반, 언론, 학계 등의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으며, 이러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김원웅 의원이 '간도협약의원천적무효확인예관한결의안'을 2004년 2월 7일 제16대 국회에서(임기만료폐기), 그리고 2004년 9월 3일 제17대 국회에(현재 계류중) 제출하였고, 또 같은 해 10월 22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간도협약이 법리적으로는 무효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²⁾ 그러나 이 이후 아직까지 우리 정부(외교통상부)에 의하여 그 이상의 일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반면 중국은 동북공정이란 국가사업을 통하여 간도를 자신의 영토임을 기정사실화하는 포석을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가운데 간도영유권의 정당한 권원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 이 논문은 지금까지 학계에서 주목하지 못한

변강사지연구중심(邊疆史地研究中心)이 주관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것을 한국에서 처음 알게 된 것은 2003년 7월경이다. 그러나 이 동북공정이 실제로 정식 성립된 것은 이미 1999년 9월 24일이다. 이날 중국은 중국사회과학원과 동북사범대학의 비준을 받아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과 동북사범대학 동북민족어강역연구중심이 공동으로 하여 '중국변강지구역사역사학회연구동북공작참(中國邊疆地區歷史與社會研究東北工作站)'을 정식 성립시키고, 24~27일 동안 길림성 장춘시와 길림시에서 대대적인 학술연토회를 거행하였는데, 이 연토회에서는 외국학자들의 중국 동북민족사에 대한 왜곡문제, 고구려민족과 정권의 귀속문제, 최근 50년의 동북민족과 변강의 연구문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토론하였다. 이에 대하여 상세한 것은 동북사범대학 동북민족어강역연구중심-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 『동북민족어강역연구』, 1999年第3期, 1999. 12 참고.

- 2) 이 국정감사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은 간도협약은 법적으로 무효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간도협약문제와 간도영유권문제는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하며, 그 이유는 국제정치의 현실은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러한 답변이 있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제17대 국정감사 회의록,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4년 10월 22일자.

사료나 관점을 가급적 많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2. 간도에 대한 몇 가지 기초지식

(1) 간도의 명칭

‘간도(間島)’라는 명칭과 관련하여 한국측과 중국측의 견해는 크게 다르다. 먼저 한국측에서는 ‘간도’라는 지명의 보편성은 전혀 문제 삼지 않으며, 다만 ‘간도’라는 지명의 유래에 대하여 곱터설, 알동(幹東)설, 간토(艮土)설, 간토(壘土)설 등이 있다.³⁾

곱터설은 ‘신의 땅’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곱터’라는 말에서 연유한다고 한다. 즉 ‘곱’은 신(神)의 옛말이며, ‘터’는 장소나 주거지 또는 고향을 뜻하는데, 이 ‘곱터’가 음이 변화하여 ‘간도’가 되었다는 설이다. 또 간도는 ‘알동(幹東)’에서 비롯되었다는 설도 있다. <용비어천가>에 의하면, 세종대왕의 6대조인 목조(穆祖)가 간도지방인 알동(幹東)에서 왕업의 기반을 닦았다고 하고 있는데, 이 알동은 경흥 무이보(撫夷堡)의 두만강 건너편에 해당하고, 이 알동의 ‘알(幹)’자는 ‘간’으로도 발음되는데, 따라서 이는 때로는 간(幹)자로 바꾸어 표기되기도 하여 ‘간동(幹東)’이 되었다가, 다시 그 음이 비슷한 간도로 되었다고 하는 설이다. 또 ‘간토(艮土)’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 설은 간도지방이 동북쪽에 있는 땅이라는 데서 기인한다. <주역>에 ‘간(艮)’은 방위상 동북향을 의미한다. 따라서 간도는 동북쪽에 있는 땅이란 뜻에서 ‘간토’라 하였고, 이것이 음이 변화하여 ‘간도’가 되었다는 설이다. 또 ‘간토(壘土)’라는 이름은 간도가 우리 한국인이 개간 및 개척한 땅이라는

3) 이에 대하여는 노계현, 『한국외교사론』(대왕사: 서울), 1984, 35-36면; 김득황, 『백두산과 북방강계』(사사연: 서울), 1987, 81-82면.

의미에 생겨난 지명이라는 설로, 역시 ‘간토’의 음이 변하여 ‘간도’가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이와는 달리 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간도(間島)’로 시작되었다는 견해가 있는데, 지금까지 학계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것이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즉 1870년 연이은 대홍에 의하여 민생이 피폐하자 아직 조정에 의하여 봉금령이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봉금령이 해이해진 상황에서 회령부사 홍남주(會寧府使 洪南周)가 민생고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만강 건너편을 개간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인수개간원서(引水開墾願書)를 제출하면 두만강 건너편에서의 개간을 허가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때 두만강 건너편을 ‘간도(間島)’라 지칭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홍남주의 조치에 회령좌수(會寧座首) 이후섭(李垆燮)이 부사에게 국법으로 금한 지역을 조정에 아무 문의도 없이 개간을 허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의제기를 하자 홍남주는 “... 우선 인수개간하고 간도(間島)라고 명명하였다가 후일에 국제문제가 생길 때는 간도라 하여 과실을 회피하려 하니...” 하였고, 이러한 개간허가 조치가 실효적이어서 주변 군(郡)에서도 호응하여 점차 확대되자 결국 관부(官府)에서는 양전관(量田官)을 파견하고 토지대장과 야초(野草)를 작성하였는데, 이것을 ‘간도토지대장(間島土地臺帳)’이라고 불렀고, 이것이 후에 ‘간도’라 부르게 된 연유가 되었다고 하는 설이다.⁴⁾

그런데 간도는 섬이 아닌데 섬 ‘도(島)’자를 쓰는가에 대하여는 종성과 온성 사이에 두만강이 분파하여 중주(中洲)가 형성되고 그 땅이 매우 비옥하였기 때문에 한인이 이를 개간하여 두 물줄기의 사이에 있는 섬이란 뜻으로 ‘간도(間島)’라고 부르면서 처음 유래되었고, 이 명칭은 후에 두만강과 압록강 건너편의 봉금지역에 조선인들이 건너가 개간하면서 이러한 개간지역을 통칭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는 설이 있다.⁵⁾

4) 현규환, 『한국유이민사』 상(홍사단출판부: 서울), 1976, 136-137면. 이 책은 이러한 내용을 윤정희, 『간도개척사』(미발간)에서 인용하고 있다.

한편 오늘날 중국은 이 지방을 간도라 하지 않고 ‘연길(延吉)’이라고 한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이 지역 산봉우리에는 통상 남빛을 띤 연기가 산을 감싸고 있으므로 주민들이 이 지역을 ‘연집강(煙集崗)’이라고 하였는데, 이 연집강이 변하여 ‘연길(延吉)’이 되었다고 한다. 이 연집(煙集)의 중국식 발음이 ‘엔지’이고 이것이 발음이 같은 연길(延吉)로 바뀌었다는 것이다.⁶⁾ 중국측은 간도란 명칭의 보편성을 부인하고, 간도라는 명칭에 대하여 한국 또는 일본의 창작 또는 날조라는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⁷⁾

한편 일본측의 설은 다음과 같다. 조선의 종성과 온성 사이의 두만강 지류에 자연스럽게 중주(中州)가 형성되었는데, 땅이 비옥하여 부근의 조선인이 개간하여 간도(壘島) 혹은 간도(間島)라고 하였는데, 두만강 건너편으로 이주가 늘면서 점차 간도라는 명칭이 확대되었다는 설이 있다. 또 간도는 조선인이 일반적으로 부르는 명칭으로 조선 함경북도와 인접한 두만강 대안 일대의 지역을 지칭하였다. 간도(間島)는 원래 간도(壘島), 곤토(坤土), 간토(壘土)라고도 하였는데, 조선인이 비옥한 지역을 간토(壘土)라 불렀고, 후에 동음문자가 와전되어 간도(間島)라고 통칭하게 되었다는 설도 있다.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도’의 명칭에 대하여는 한국측과 중국측의 주장은 크게 차이가 있으며, 일본측의 주장은 대체로 한국측의 주장과 유

5) 岩本善文-久保田卓治, 『北鮮の開拓』(北鮮の開拓編纂社:京城), 1928, 233면.

6) 李峰, “延吉略史”, 延邊歷史研究所, 『延吉歷史研究』 I, 1986, 3면.

7) 徐曦東, 『東三省記略』(商務印書館:上海), 1915, 23-24면; 王芸生, 『六十年來的中國與日本』(天津大公報社:天津), 1932, 8면; 吳忠亞, “吳祿貞與所謂‘間島’問題”, 楊昭全 編, 『中朝邊界研究文集』(吉林省 社會科學院:長春), 1998, 891-892면; 陳朝陽, “中韓延吉界務之交涉(1882-1909)”, 楊昭全 編, 상계서, 970면; 張存武, “清代中韓邊務問題探源”, 中央研究院(臺北), 『近代史研究所集刊』 2, 470면; 張存武, “‘間島’說的形成”,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동방학지』 23-24합집, 1980, 323-330면.

8) 石森久彌, 『間島の實情』(朝鮮公論社:京城), 1931, 5면; 韓國駐劄日本軍參謀部 編, “間島에 관한 調査書”, 국회도서관, 간도영유권관계발췌문서:『일본외무성육해군성문서』 제1집, 1975, 253면; 牛丸潤亮-村田懋麿, 『最近間島事情』(朝鮮及朝鮮人社:京城), 1927, 3면.

사하다. 이들 설과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간도라는 명칭은 조선이나 청이 공식적으로 사용한 명칭은 아니며, 특히 조선의 일반인에 의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지명이라는 것이다. 둘째, 이렇게 형성된 간도라는 지명이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으며, 또 조선 조정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간도라는 지명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고 이를 대신하는 다른 특별한 지명도 없었던 것 같다.⁹⁾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조선왕조실록(태조-철종)』에서는 ‘간도(間島)’라는 표현이 한번도 사용되지 않았고, 일본에 의해서 작성된 『고종순종실록』에서야 처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¹⁰⁾

(2) 간도의 범위

간도영유권문제를 다루면서 그 기초적 사항의 하나로 도대체 간도란 어디를 또는 어디까지를 가리키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나, 아니면 간도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범위를 확정지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런데 간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앞에서 간도의 명칭에서 감지할 수 있듯이 일반인들 사이에 형성된 명칭이며, 국가가 예컨대 간도라는 명

- 9) 간도영유권문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의 하나로 고지명의 정확한 고증이 있다. 그 명칭의 변화, 위치 또는 범위 등을 고증하는 것이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 간도지역에는 당시 심양(瀋陽), 영고탑(寧古塔), 오라(烏喇), 길림(吉林), 건주(建州) 등의 지명이 나타나고, 특히 청나라에서는 심양을 성경(盛京), 건주를 흥경(興京)이라고 불렀으며, 이 지역을 통칭하는 명칭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은 이 지역을 ‘동북(東北)’ 또는 ‘동북3성(東北三省)’이라고 부른다.
- 10)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간도’라는 지명과 관련하여 사료조사가 수행되지 않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일단 조선왕조실록을 통하여 조사를 해 본 결과 고종순종실록에서야 처음으로 간도라는 지명이 나타나기 시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高宗實錄』, 고종 21년(1884년) 2월 24일 경오조 고종 40년(1903년) 양력 08월 11일조; 『純宗實錄』, 순종 2년(1909년) 양력 3월 18일조; 순종 2년 4월 12일조; 순종 2년 5월 24일조; 순종 2년 9월 4일조; 순종 2년 10월 20일조; 순종 2년 10월 29일조; 순종 2년 11월 8일조; 순종 2년 11월 21일조.

칭을 가지고 행정구역을 확정했다던지 하는 명확한 조치가 한번도 없었으므로 그 범위를 분명하게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여러 가지 기준과 역사적 사건에 의하여 그 광협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한국 정부로 하여금 중국에 주장하여 그 귀속을 다투게 하고자 하는 간도의 범위는 역사적으로 보아도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 권원을 따지는 법리 검토와 이를 전제로 한 정책 또는 전략의 입장에서 앞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기초적인 인식하에서 간도의 범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간도는 압록강과 두만강의 북쪽에 있는 일정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압록강 건너편을 서간도, 두만강 건너편을 동간도라 한다.¹¹⁾ 그저 ‘간도’라 하면 흔히 이 동간도를 가리킨다. 그러나 여기서 그 경계는 남쪽의 압록강과 두만강만이 명확할 뿐 그 북쪽한계나 동쪽이나 서쪽의 한계는 명확하지가 않다. 다만 그 범위가 명확치는 않다는 점에서 간도와 유사한 사정이 있는 ‘만주’와의 관계에서 보면, 간도는 만주의 남동쪽의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동간도는 다시 동서를 나누어 동간도 서부와 동간도 동부라고 나누어지기도 하며,¹²⁾ 동간도 동부는 북간도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도 역시 정확한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또 두만강 남쪽의 주요도시인 무산, 회령, 종성, 온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두만강 대안의 일정한 지역을 무산간도, 회령간도, 종성간도, 온성간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처럼 간도의 범위는 조선의 일반인에 의하여 그 명칭이 형성되어가는 과정과 밀접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역사상의 사건을 기준으로 한다면 또 다른 범위가 제시될 수 있다.

11) 오늘날 중국의 행정구획에 의할 때 서간도는 요녕성과 길림성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동간도는 가까운 길림성에 포함되어 있고 멀리는 흑룡강성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가 대체로 동간도에 해당하며, 특히 한인이 집중하여 개간한 지역이다.

12) 이는 두만강 건너편의 광제곡 일대를 동간도, 화룡곡 일대를 서간도로 불렀다는 것과 대략 동일한 지역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주 7) 참고.

우선 1712년의 백두산정계비는 “(국경을) 서쪽으로는 압록강으로 하고, 동쪽으로는 토문강으로 한다(西爲鴨綠 東爲土門)”고 하였고, 뒤에 ‘토문’에 대한 해석 차이로 1880년대 조선·청간에 영토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청은 이를 두만강이라 하고, 조선은 송화강 지류의 하나라 하여 대립되었으므로 이 때 간도라 함은 두만강 북쪽과 송화강 지류인 토문강의 동쪽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이때 조선의 주장과 같이 토문강을 흑룡강의 지류인 송화강의 한 지류인 것으로 볼 때 그 범위를 해석하자면 두 가지가 가능할 것이다. 하나는 백두산정계비의 비문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분수령을 찾아 국경을 정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중시하여 이로부터 지류인 토문강의 흐름을 따라 백두산정계비-토문강-송화강-흑룡강-해구(海口)를 잇는 선을 경계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오늘날 러시아령으로 되어 있는 연해주를 포함하여 광대한 지역이 한국의 영토로 귀속된다. 이러한 해석은 경흥감사 황우영(黃祐永)이 1903년 11월에 외부대신 이도재(李道宰)에게 올린 의견서에 잘 나타나 있으며,¹³⁾ 또 1904년 발간된 『북여요선(北興要選)』에서도 나타난다.¹⁴⁾ 다른 하나는 비문에 나타난 ‘토문’이란 문구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백두산정계비에 의하여 토문강까지만 경계가 확정되었으며, 토문강이 송화강에 합류하는 지점부터 동쪽으로의 경계, 즉 남북을 나누는 경계는 확정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는 간도의 범위에

13) 경흥감사 황우영은 그 의견서에서 “... 서안에 토백이 있는데 문과 같은 것이 수십 리며 또 돌무더기와 흙무더기가 없는 곳에는 깊은 계곡에 흐를 물은 큰 강을 이루어 5~6백리를 흘러서 송화강과 합류하고 또 흑룡강으로 들어가 합류하여 바다로 들어간다. 이것은 만고에 바꾸지 못할 국경선이 된다. ... 정해진 강도를 가만히 앉아서 남에게 양여하니 어찌 조정의 실책이 아니리오. ...”라고 하였다. 국회도서관, 전게서, 주 8), 1면.

14) 『北興要選』 下卷, 查界公文攷. 『북여요선』은 두만강 이북부터 토문강 이동에 걸쳐있는 분쟁지역에 대한 조선의 영유권을 확인하고, 이 곳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보호하는 통치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쓰여진 것으로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이는 간도시찰사(間島視察使)인 이범윤의 요청에 따라 김노규(金魯奎)에 의하여 1903년 초에 원고가 완성되었고, 이 원고는 1904년 오재영(吳在英)과 조항식(曹恒植)에 의하여 서울에서 2권1책으로 모두 100부가 간행되었다. 『북여요선』의 국문번역본과 해제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토문제연구』 창간호, 1983, 221-300면에 수록되어 있다.

대하여 여전히 별다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게 된다.

다음으로 1909년 청·일간에 체결된 간도협약에 의하면 다른 범위가 나타난다. 이 간도협약은 두만강을 도문강이라 칭하며, 두만강의 지류 중에 가장 북쪽에 있는 홍토수가 아니라 그 보다 남쪽에 있는 석을수를 국경으로 정하고, 간도 자체를 청에게 귀속시켰지만 간도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들과 관계하여 ‘한인잡거구역’을 설정하였는데, 이 한인잡거구역이 간도 전체는 아니지만 간도의 중심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이 한인잡거구역은 백두산정계비로부터 한쪽으로는 석을수로 하여 두만강을 따라 무산, 회령, 종성을 지나서 그 하류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두만강의 한 지류인 알아하(嘎呀河, 또는 艾河)가 안산(安山) 부근에서 두만강으로 합쳐지는 선과 그로부터 알아하의 상류까지로 하여 그 서북쪽과, 다른 한쪽으로는 북증산(北甌山), 고집령(高集嶺)을 지나는 노령산맥(老嶺山脈)과 합이파령(哈爾巴嶺)을 지나는 노야령산맥(老爺嶺山脈)을 따라 알아하의 상류까지로 하여 그 동남쪽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동간도 동부 중에서 다시 그 서부지역만이 해당된 것이다.¹⁵⁾

3. 백두산정계비 이전의 조·청 국경

(1) 초기의 조·청 국경

에당초 간도영유권문제의 당사국인 조선과 청 간에는 국경이라는 것이 없었다. 조선과 청 간의 국경이 처음으로 성립된 것은 정묘호란의 강화조

15) 청·일 간도협약 제4조와 별첨 지도. 이 한인잡거구역도는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국경자료총서』 I, 篠田治策 편저, 『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紀要』(1907), 1984의 후미에 첨부되어 있다.

약이라 할 수 있는 1627년 3월 3일의 소위 「강도회맹(江都會盟)」에 의해서였다. 강도회맹에는 “조선국과 금국, 즉 청국은 약속하노니 우리 양국은 이미 강화에 합의하였다. 이후로 양국은 각각 약속을 준수하며 각각 경계를 봉하여 온전히 지킨다(朝鮮國與金國立誓 我兩國已講和好 今後兩國 各遵誓約 各守封疆)¹⁶⁾”라고 되어 있는데, ‘各守封疆¹⁷⁾’이라 한 것으로 보아 양국간에 국경을 정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 구체적으로 어디로 경계를 정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강도회맹 자체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다른 사료들에 의해서도 지금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사항으로 회맹 당시 양국간에 오고간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두 나라 군대가 압록강을 서로 넘지 않기로 하자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로 미루어 보아 압록강이 경계의 한 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⁸⁾ 그런데 이를 분석하여 보면 이때의 압록강은 압록강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압록강 하구의 일정한 지역에 한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첫째로 일단 당시 압록강—백두산—두만강을 한 선으로 하고 그 북쪽의 일정한 지역이 봉금령에 의하여 무인지대화하여 실질적인 통치는 하지 않고 방치하였던 지역이었으며, 둘째로 청과 조선의

16) 『仁祖實錄』卷十五, 仁祖 五年 三月 三日 庚午條.

17) “各守封疆”이란 말은 조선왕조실록의 해당 기사에 여러 차례 등장한다. 예컨대 『仁祖實錄』卷十五, 仁祖 五年 二月 壬寅條, 壬子條, 辛酉條 및 同年 三月 庚午條 등.

18) 예컨대 인조실록에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기를 “지금 이후부터는 두 나라 병마가 다시는 압록강에서 한 걸음의 땅도 넘지 않으면서 각각 봉강을 지키고 각각 금약을 준수하여 백성들을 편안히 하고 전쟁을 종식시켜 …” 하고 있고(『仁祖實錄』卷十五, 仁祖 五年 二月 十五日 壬子條), 또 “맹약을 이미 맺었으니 세세한 일로 다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원컨대 귀국은 각처에서 사로잡은 장령과 백성들을 모두 쇄환하고 속히 압록강을 건너 가서, 각기 봉강(封疆)을 지키자면 맹약을 준수해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하고 있으며(『仁祖實錄』卷十五, 仁祖 五年 三月 十三日 庚辰條), 또 “전에 호차(胡差)의 말을 듣건대, 원장군(原昌君)의 환국(還國)이 5월 중에 있을 것이라 하였으니 돌아올 시기가 멀지 않았습니다. 압록강 서쪽 지방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강을 건너 뒤에 흑시 모병(毛兵)이 무리한 행동을 저지르까 매우 염려됩니다…” 라고 하고 있다(『仁祖實錄』卷十五, 仁祖 五年 五月 十八日 癸未條).

왕래는 통상 압록강 하구의 의주(義州)와 압록강 건너편에 있는 봉황성(鳳凰城)을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때 군사의 출병 또한 이 경로를 통하였으며, 셋째로 이는 특히 청 호부(戶部)의 기록에 의하면 여기서 압록강은 강 전체가 아니라 압록강 하구의 남반(攬盤) 부근의 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애초에는 압록강 건너편의 서간도도 조선의 영토였다고 보인다. 즉 강도회맹이 있는 지 11년 뒤인 1638년에 청의 태종은 남반이라는 압록강 하류지점에서 봉황성(鳳凰城)을 거쳐 감양변문(鹹陽邊門)을 지나 성장문(城廠門)과 왕청변문(旺晴邊門)에 이르는 선에 방압공사(防壓工事)를 하였는데, 신계(新界)는 구계(舊界)에 비하여 동쪽으로 50리를 더 전개하였다고 되어 있다.¹⁹⁾ 아마도 강도회맹에 의하여 압록강 하구 일대로부터 정해진 국경, 즉 구계는 이 방압공사로 인한 신계인 남반-봉황성-감양변문-성장문-왕청변문 선보다 50리 서쪽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당시의 고지도에도 나타나 있다. 당시의 국경을 표시한 고지도를 보면 압록강 하구의 봉황성 부근에서부터 북쪽으로 상당한 길이의 책(柵; 울타리)이 있고, 계속해서 그 위로는 성(城)이 쌓여 있으며, 엽혁참(葉赫站)의 서쪽의 한 지점에서 동쪽으로 혼동강(混同江)이 역니하(易屯河)와 낙니강(諾泥江)과 만나는 부근까지 책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그 동쪽으로 바다에 이르는 지역까지는 표시가 없다.²⁰⁾ 이러한 국경상황은 백두산정계비가 설치될

19) 篠田治策, 『白頭山定界碑』(樂浪書院: 東京), 1938, 22면; 稻葉岩吉, 『滿洲發達史』(平凡社: 東京), 1940, 319면; 양태진, 『한국의 국경연구』(동화출판공사: 서울), 1981, 122면; 노계현, 전제서, 주 3), 44면.

20) 天下地圖朝鮮總圖烏喇地方圖, 규장각 소장. 이 지도에는 관심을 끄는 기록이 많이 기재되어 있다. 즉 좌하측에 ‘西南極朝鮮平安道界(서남쪽으로는 조선 평안도의 경계에 이른다)’고 하였고, 그 바로 위에는 ‘自審陽西北至北京一千七百里 東至鴨綠江二百六十里(심양으로부터 북경까지는 서북쪽으로 1,700리요, 압록강까지는 동쪽으로 260리이다)’고 하였다. 또한 지도의 상단에는 좌측으로부터 ‘西北極蒙古(서북쪽으로는 몽고에 이른다)’, ‘北極大荒(북쪽에는 넓은 황무지가 있다)’, ‘東北極大荒(동북쪽에는 넓은 황무지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우측 중단과 우하측에는 흑룡강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과 동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2) 봉금지책의 실시

한편 이 시기에 조선과 청은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의 1,000여리에 달하는 지역에 소위 봉금령(封禁令)을 실시하여 일반인들의 출입을 금지하여 무인지대화하였다. 이렇게 봉금지책을 실시한 청의 이유는 청이 명을 공격하여 점차 대륙의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동북 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경제발전이 저조해졌기 때문이었다.²¹⁾ 한편 조선도 이 지역에서의 봉금을 특히 초기에는 철저히 이행하였다.

한편 봉금지대의 범위는 조선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지 않았고, 청도 유조변장(柳條邊牆)을 넘지 않았으므로, 결국 압록강-두만강선 이북과 유조변장 이서와 이남지방이 봉금지대라 하겠다. 봉금지대내에는 영고탑 등이

해가 그려져 있으며, 특히 두만강구에는 녹둔도(鹿屯島)가 표시되어 있으며, 그 우측인 두만강의 북쪽에는 ‘東南極朝鮮咸鏡道界(동남쪽으로는 조선 함경도의 경계에 이른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편 지도의 중앙에는 백두산이 표시되어 있고 그 위에는 ‘明志曰 橫亘千里 高二百里 其嶺有澤周八十里 南流爲鴨綠江 東流爲豆滿江 北流爲混同江(<明志>에 이르되 옆으로는 1,000리 위로는 200리이며, 그 정상에는 못이 있는데 둘레는 80리로 남쪽으로 흘러 압록강이 되고, 동쪽으로 흘러 두만강이 되며, 북쪽으로 흘러 혼동강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다.

- 21) 청의 경우 세조가 1653년 「요동초간조례(遼東招墾條例)」를 만들어 요동을 개간하기 위해 만주에 한족(漢族)을 유치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그 후 강희제에 이르러 만주 지방의 치안이 정돈되자 만주로 들어가는 한족이 늘어 당시 만주, 특히 간도지역(백두산)의 특산물인 산삼·약초·사금 등을 몰래 캐어가는 자가 적지 않았다. 그 결과 청조의 발상지이자 청 군대의 중추인 팔기군의 고향이 한족 때문에 위태해진다고 판단하여, 1666년에 한족의 초민령(招民令)을 폐지하고 봉금지(封禁制)를 채택하고, 다시 1746년에 이곳에의 이민금지령을 내려 봉금을 더욱 강화하였다. 또 1762년 청은 「영고탑등처금지유민조례(寧古塔等處禁止流民條例)」를 발표하여 유조변장(柳條邊牆) 밖의 길림과 흑룡강 지방에의 봉금을 엄중히 실행했다. 楊昭全-孫玉梅, 『中朝邊界史』(吉林文史出版社:長春), 1993, 164면; 衣興國-刁書仁, 『近三百年東北土地開發史』(吉林文史出版社:長春), 1994, 52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봉금지대가 과연 언제 어떻게 설정된 것인가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²²⁾ 또 이 봉금지대의 성격에 대해서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당시 동양에서는 선에 의한 국경선보다는 면에 의한 변방 개념이 통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인지대는 양국의 변방이었고, 봉금령을 실시한 것은 이 변방에 대해 양국이 취한 구체적인 조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변방인 무인지대가 조선과 청 가운데 누구의 영토였는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고,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 봉금령은 1867년 청에 의해 일방적으로 폐지되었고, 1883년 조선에 의해서도 폐지되었다.

4. 백두산정계비의 설치

한편 청은 강희제(1662-1722년)에 이르러 중원(中原)을 통일하고 왕조의 극성기를 맞이하게 되자, 그 동안 전해져 오던 건국신화에 나오는 부쿠리산(布庫里山)을 백두산으로 추정하고 청조 발상지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추정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강희제는 1712년 목극등(穆克登)을 파견하여 국경문제를 처리하고자 하였다. 이에 조선은 박권(朴權)을 접반사(接伴使)로 하여 함경도 관찰사 이선부(李善溥)와 함께 파견하였다. 목극등 일행은 1712년 5월 5일에 후주(厚州)에 도착하여 조선 접반사와 만났다. 여기서 조선과 청의 대표 일행은 배로 혜산(惠山)에 이르렀다가 다시 육로로 90여리

22) 사료의 기록의 분석에 의하여 대략적으로 청 태종년간(1626-1643년)에 설책(設柵)하고 책문밖 100리의 땅을 비워 두어 서로 접근치 못하게 한 것으로 보는 유력한 견해가 있다. 篠田治策, 전계서, 주 19), 24면; 신기석, 『간도영유권에 관한 연구』(담구당:서울), 1979, 10면. 한편 중국측 자료에는 청 순치(順治)년간(1643-1661년)에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1668년(강희 7년)부터 봉금정책은 나날이 강화되었다고 한다. 楊昭全-孫玉梅, 상계서, 164면.

오르다가 목극등은 박권과 이선부가 나이가 많고 백두산 등산길이 험하다는 이유로 동행을 중단시키고 무산(茂山)에 가서 기다리도록 했다.

목극등은 강희제의 명에 따라 백두산 천지를 청의 영토로 하기 위하여 일단 백두산 정상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분수령을 찾아 국경을 삼는다는 원칙을 정하고, 조선에 대하여 강압적으로 이를 단행하였다.²³⁾ 이에 따라 백두산 정상에서 남동쪽 아래 10리 되는 지점에서 분수령을 발견하고, 그 곳을 분계지점으로 정하여 비석을 하나 세웠다. 이 날이 1712년 5월 15일이며, 이 비에는 “烏喇總管穆克登 奉旨查邊至此審視 西爲鴨綠 東爲土門 故於分水嶺上 勒石爲記(오라총관 목극등은 황제의 명을 받들어 변경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 곳에 이르러 살펴본 결과 서쪽으로는 압록강으로, 동쪽으로는 토문강으로 정하는 고로 분수령상 돌에 새겨 기록한다)”고 되어 있다.²⁴⁾

그리고 토문강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중간에 땅 밑으로 잠류(潛流)하여 어느 만큼 흐르다가 다시 땅 위로 흘러 북쪽으로 방향을 바꿔 송화강과 합쳐지므로, 이 잠류하는 지역에 토퇴와 석퇴를 쌓아 국경을 명확히 표시하였다. 이 국경표시는 훗날 국경과 관련하여 양국간에 분쟁이 발생할 것을 염려한 목극등의 지시로 조선에 의하여 축조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목극등이 돌아가 강희제에게 보고한 복명서(復命書)에도 나타나 있다.²⁵⁾ 또 당시 목극등의 답사 경로와 정계비의 위치와 수류(水流)의 관계 등을 표시

23) 청이 처음부터 영토에 관한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세한 설명은 신기석, 상계서, 14-25면; 노계현, 전계서, 주 3), 55-60면.

24) 백두산정계비는 1712년 설치된 이래 1931년까지 있었다. 그러나 1931년 7월 28~29일 사이의 야간에 이 비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백두산등산도(白頭山登山道)’라는 낱말이 대신 세워졌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관계국들의 여러 사료에도 이 비문이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특히 비가 없어지기 전에 찍어둔 사진과 탁본이 아직 남아 있다. 사진은 양태진, 전계서, 주 19), 39면, 탁본은 楊昭全-孫玉梅, 전계서, 주 22), 193면.

25) 이 복명서는 “立碑後從土門源審視流至數十里不見水痕從石縫暗流至百里方現巨水 此無水之處如何使人知有邊界不致相犯 我國以土門源斷處或築土或聚石樹柵以接下流之意 …”라고 하였다. 外務部, 間島-西北邊境 歸屬問題關係史料拔萃, 其(一), 5면 참고. 이 복명서는 백두산정계비가 조선과 청간의 국경을 획정한 조약이며, 토퇴, 석퇴 또는 목책을 설치한 토문강이 국경이 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 지도가 작성되었는데, 이 지도는 오늘날에도 남아 있다.²⁶⁾

결론적으로 백두산정계비를 기준으로 할 때 조·청 국경은 압록강-백두산정계비-토포석퇴-(송화강 지류인)토문강 선으로 획정된 것이고, 그 결과 조선은 압록강 북쪽의 소위 서간도를 청에게 빼앗기게 되었다. 그런데 이 백두산정계비를 두고 그 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이를 ‘정계비’가 아니라 ‘석비(石碑)’ 또는 ‘목비(穆碑)’라 불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²⁷⁾ 또 백두산정계비 설치 후인 1735년 이래 근대적 측량술과 조선과 청의 자료들을 근거로 제작된 서양의 고지도들에는 일률적으로 압록강-두만강 이북으로 국경을 표시하고 있어 백두산정계비와 충돌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연구가 필요하다.

5. 조·청 간도영유권분쟁의 발단과 전개

1712년 백두산정계비에 의하면 “서위압록 동위토문(西爲鴨綠 東爲土門)”으로 국경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인 17세기 중·후반부터 설정되었던 봉금정책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러한 봉금정책은 처음에는 엄격하게 유지되다가 19세기 중엽 조선과 청이 공히 내우외환을 겪게 되면서 해이해졌다. 가난과 지방관리의 횡포를 피하여 조선인들이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 간도지방에 두루 이주하였으며 청 관내(關內)의 한족(漢族)²⁸⁾들도 압록강 북쪽지방, 즉 서간도지방에 이주하게 되었다.

26) 朴權 定界使, 康熙 五十一年 我肅宗 三十八年 壬辰 穆胡克澄定界時 所模圖.

27) 양태진, 전계서, 주 19), 121-129면; 이일걸, “간도협약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제37권 제2호, 1992, 199-207면.

28) 중국에서는 만리장성 동단의 관문인 산해관(山海關)을 기준으로 북경이 있는 서남지방을 ‘관내(關內)’라 하고, 간도가 있는 동북지방을 ‘관동(關東)’이라 하였다. 그리고 여진족이 지배민족이었던 청이 봉금정책을 실시한 목적의 하나는 산해관 일대를 봉쇄함으로써 관

봉금령이 엄격하던 초기에도 범월사건이 종종 발생하였으나 19세기에는 조선인의 월강사간(越江私墾)이 활발해져 인접 대안에 대한 밀경(密耕)에 그치지 않고 더욱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으며, 체류경작방법도 일귀경작방식(日歸耕作方式)이 연장되어 춘경추귀방식(春耕秋歸方式)으로 대담해졌다. 당시 봉금지역 내로 이주한 조선인의 규모는 이미 엄청났다. 예컨대 1869년에는 압록강 하구의 봉황성(鳳凰城)과 변문(邊門) 등지의 조선인 개간민이 이미 남녀 10만명이 넘는다는 기사가 나오고,²⁹⁾ 또 1870년에는 연이은 대흉으로 민생이 피폐하자 지방관인 회령부사 홍남주는 민생고의 해결은 월강하여 개간을 허용하는 길밖에 없다고 보고 백성들이 인수개간원서를 내면 부사가 이를 허가함에 따라 수일간에 두만강 건너편의 백여 정보가 농토가 되었다고 한다. 이어 그 이듬해 주변의 다른 군(郡)에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여 순식간에 길이 500리, 넓이 40~50리의 땅이 개간되었다. 이리하여 관부(官府)에서는 양전관(量田官)을 파견하여 전정(田政)을 설치하고 토지대장과 야초(野草; 지세(地稅)를 명기한 장부)를 작성하였는데, 이를 ‘간도토지대장(間島土地臺帳)’이라 했다고 한다. 또한 당시의 함경도 관찰사 어윤중(威慶道 觀察使 魚允中)은 함경북도를 시찰하면서 “월강죄인을 처단할 수는 없다(越江罪人不可盡殺)”고 하고 봉금령을 위반한데 대한 형벌을 중지하고 오히려 지권(地券)을 발급하여 두만강 건너편의 개간민이 합법적인 주민이 될 수 있게 하였다.³⁰⁾

한편 청의 경우 1858년 러시아와 소위 혼춘조약(琿春條約)을 체결한 이후 동북변강의 위기를 맡게 되자 소위 이민실변정책(移民實邊政策)을 쓰게 되었는데, 이때 청은 두산정계비상의 토문강이 두만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이북을 청의 영토로 하려고 하였다. 이는 사실상 청이 1636년 병자호란

내의 한족(漢族)들의 관동으로의 이주를 막자는 데 있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때까지는 현대 중국의 지배민족인 한족(漢族)과 관동지방과는 관계가 없다.

29) 『高宗實錄』, 高宗 6年(1869年) 8月 25日 甲子條.

30) 동간도와 서간도를 포함한 간도지방으로의 유이민 과정은 현규환, 전계서, 주 4), 134-144면 참고.

으로 설정된 조선과의 종속관계를 활용한 것이었다.³¹⁾ 이러한 청의 속국론(屬國論)은 1895년 청·일 전쟁에서 일본에 패할 때까지 유지되었는데, 이러한 배경에서 1881년 청은 일방적으로 봉금을 해제하고 오늘날의 국적변경에 비유될 수 있는 치발역복(薙髮易服)을 강요하였고, 조선인이 이 지역에 건너가 개간한 것을 두고 이들은 중국의 영토로 불법월경(不法越境)한 것이라 하여 조선인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황무지를 소작하도록 ‘청표(淸票)’를 발급하였다.³²⁾

1883년 4월 청 돈화현지사 조돈성(敦化縣知事 趙敦誠)은 조선의 종성부사와 회령부사에게 조회하여 그해 추수 후에 조선인 개간민을 전부 쇠환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고시하였다.³³⁾ 한편 조선은 1882년 12월 10일 어윤중을 서북경략사로 임명하였고, 어윤중은 동월 28일에 서울을 출발하여 1883년 압록강을 답사하고 종성에 도착하였다. 이 즈음 종성, 회령, 무산, 온성의 백성들이 모여 백두산정계비와 토문, 두만 양강을 답사한 결과 청 돈화현 고시의 부당함을 지적하여 종성부윤 이정래(鍾城府尹 李正來)에게 돈화현에 정당한 경계를 정하도록 조회해 줄 것을 호소하였고,³⁴⁾ 이에 어윤중은 김우식(金禹軾)을 시켜 백두산정계비를 답사하게 하였는데, 그 결과는 위 주민들이 말한 바와 같았다.³⁵⁾ 이로써 어윤중은 청이 백두산정계비의 토문을 두만으로 오인하고 동간도를 자신의 영토로 생각하여 조선인의 쇠환을 요구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어윤중은 같은 해 10월 4일 서울로 돌아와서 고종에게 토문강

31) 박창욱, “력사의 재조명”, 김영만 외 편, 『회고와 전망』(료녕민족출판사: 심양), 1997, 13-14면.

32) 청이 일방적으로 ‘토문’을 ‘두만’으로 보고, 두만강을 국경으로 하려는 청 내부에서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楊昭全-孫玉梅, 전계서, 주 21), 232-236면 참고. 이 책에서는 『淸實錄』, 『吉林分巡道送會典館淸冊』, 『東北續錄』 등의 사료를 인용하고 있다.

33) 『淸季中日韓關係史料』第1913頁. 楊昭全-孫玉梅, 전계서, 주 21), 249면에서 재인용.

34) 『北輿要選』下, 勘界公文攷; 篠田治策, 전계서, 주 19), 136면; 吉林省社會科學院, 『中朝關係通史』(吉林人民出版社: 長春), 1996, 557면.

35) 篠田治策, 상계서, 137-138면; 吉林省社會科學院, 상계서, 558면.

이남·이동의 간도지역이 조선의 영토임을 보고하고, 조선도 정식으로 간도 지방의 봉금령을 해제하여 이민을 장려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고종은 어윤중의 간도 실태보고 및 건의를 수용하면서 영토 확보와 이민 보호하는 차원에서 청에 국경획정을 위한 감계회담을 제의하였다. 이리하여 조선과 청간에는 1885년 을유감계회담과 1887년 정해감계회담의 2차례의 회담을 가졌는데 합의를 보지는 못하였다. 양측의 주장의 요지는 청측은 토문은 도문 및 두만과 동일한 강이라 고집하고, 조선측은 토문과 두만은 별개의 강이라 하였다.³⁶⁾ 또 이 2차례의 감계회담시 각각 감계지도가 작성되었다.³⁷⁾

6. 일본의 간도문제 개입과 청·일 간도협약의 체결

(1) 일본의 간도영유권문제 개입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대한제국에 대한 장악을 강화하고 1905년 11월 17일 소위 을사조약을 체결하여 외교권을 박탈하여 갔다. 이미 당시에 을사조약의 무효에 대하여는 논란이 많았으나 현실적으로는 일본의 강압 아래 이 조약이 시행되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간도의 한인들을 방치할 수만은 없어서 1906년 11월 18일 대한제국 참정대신 박제순(朴諸純)이 통감으로 와 있는 이등박문(伊藤博文)에게 공문을 보내어 간도한인에 대한 보호를 의뢰하였다.³⁸⁾ 이러한 의뢰를 받은 일본은 1907년 8월

36) 이 두 차례의 감계회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신기석, 전게서, 주 22); 노계현, 전게서, 주 3);篠田治策, 상게서; 楊昭全-孫玉梅, 상게서 등 참고.

37) 당시의 지도는 楊昭全-孫玉梅, 상게서, 284-285면 간지(1885년 을유감계지도)와 338-339면 간지(1887년 정해감계지도)에 게재되어 있다.

간도에 통감부간도임시파출소를 설치하는 한편 같은 해 8월 19일 북경주재 일본 공사를 통하여 청 정부에 간도영유권문제가 오랫동안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으나 이 지역의 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본이 관리를 파견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하였다.³⁸⁾ 이렇게 하여 일본이 대한제국을 대신하여 간도영유권문제에 개입하게 되었다. 청·일간의 회담은 1907년 8월부터 시작하여 간도협약이 체결된 1909년 9월까지 2년여에 걸쳐 북경에서 청 정부와 일본 공사간에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일본은 간도는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주장하였고 이를 위하여 일본이 제시한 근거는 상당히 치밀한 것이었다.⁴⁰⁾ 일본이 간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라고 주장한 데는 그것이 사실이어서 그런 것 외에도, 간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로 확정될 경우 일본은 대한제국의 병합으로 간도도 자동적으로 수중에 넣게 된다는 판단도 있었다.⁴¹⁾

그런데 청·일간의 회담이 대립만을 거듭할 뿐 성과를 보이지 못하자 일본은 간도영유권문제만을 가지고 청과 논의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들의 대륙침략정책의 차원에서 간도문제보다 더 주요한 의미를 가지는 만주 전역에 관한 다른 현안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1909년 2월 6일 소위 ‘동삼성육안(東三省六案)’이라는 것을 내놓았다.⁴²⁾ ‘동삼성육안’이란 흔히 만주라 불리는 청 동부의 3개 성, 즉 흑룡강성, 길림성, 봉천성에 관한 6개의 안이라는 것으로 ① 만주철도의 병행선인 신민둔(新民屯)과 법고문(法庫門)의 신법철도(新法鐵道)에 대한 부지권문제, ② 대석교(大石橋)와 영구(營口)간의 지선문제, ③ 경봉철도(京奉鐵道)를 봉천성(奉天城) 밑까지

38) 이 공문에 대하여는 국회도서관, 전게서, 주 8), 5면;篠田治策, 전게서, 주 19), 250-251면;楊昭全-孫玉梅, 전게서, 주 21), 453, 456, 483면 참고.

39) 이 성명서에 대하여는 국회도서관, 상게서, 140면.

40)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계현, 전게서, 주 3), 94-99면 참고.

41) 沈茹秋, 『間島調査實錄』(延邊大學出版社:延吉), 1987, 4-5면.

42) 당시 일본의 간도문제에 대한 태도를 변경하는 과정에 대하여는 국회도서관, 전게서, 주 8), 241-249면;牛丸潤亮-村田懋磨, 전게서, 주 8), 41-56면 참고.

연장하는 문제, ④ 무순(撫順) 및 연대(煙臺) 탄광의 채굴권문제, ⑤ 안봉선(安奉線) 연안의 광무문제, 그리고 ⑥ 간도귀속문제의 6가지를 말하는 것이다.⁴³⁾

그런데 이 6개의 안은 내용상 전5안과 후1안으로 구분된다. 전5안은 청이 일본에게 만주에서의 철도 또는 탄광 등에 대한 다섯 가지의 이권을 부여하는 것이고, 후1안은 그러면 그 대가로 일본이 간도영유권을 청에게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 동삼성육안의 의미는 전5안에 의하여 일본이 만주 전역에서의 이권을 가지게 되면 그에 필요한 인원과 장비뿐만 아니라 그들의 보호에 필요한 병력을 투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⁴⁴⁾ 그럴 경우 일본은 대륙침략을 위한 군사적 거점을 합법적으로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간도를 청에 귀속시켜도 장기적으로는 그들의 대륙침략정책을 위하여 유익하다는 것이다.

(2) 「청·일 간도협약」 및 「청·일 만주협약」의 체결

동삼성육안의 의미를 눈치챈 청은 처음에는 이를 거부하였으나 결국은 일본의 제안대로 받아들여 1909년 9월 4일 북경에서 소위 「청·일 간도협약(淸-日 間島協約)」과 「청·일 만주협약(淸-日 滿洲協約)」을 동시에 체결하였다. 이 중 간도협약은 동삼성육안중에서 후1안을 조약화한 것이고, 만주협약은 전5안을 조약화한 것으로 간도협약과의 상호교환의 성질을 가진 불가분의 일체라 할 것이다.⁴⁵⁾

청·일 간도협약은 청의 흠명외무부상서 회판대신 양돈언(欽命外務部尙書 會辦大臣 梁敦彥)과 일본의 특명전권공사 이집원안길(特命全權公使 伊

43) 이한기, 『한국의 영토』(서울대학교 출판부:서울), 1969, 337면; 신기석, 전게서, 주 22), 92면; 노계현, 전게서, 주 3), 99면.

44) 고영일, 『조선축력사연구』(료녕인민출판사:심양), 1982, 153면.

45) 篠田治策, 전게서, 주 19), 278면.

集院彦吉이 북경에서 조인하였는데, 전문과 7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 한인잡거구역도가 첨부되어 있다. 그리고 이 협약은 중국어와 일본어로 각각 작성되었는데, 중국어 명칭은 「日中圖們江滿韓界務條款」이고 일본어 명칭은 「間島に關する日清協約」이다. 그 간도관련 주요내용은 ① 청일 양국은 도문강(圖們江)이 선린의 호의에 비추어 조선과 청의 국경임을 서로 확인한다(전문), ② 강원(江原)지방에 있어서는 정계비를 기점으로 하여 석을수(石乙水)로써 양국의 경계로 한다(제1조), ③ 그 대가로 청은 용정촌(龍井村), 국자가(局子街), 두도구(頭道溝), 백초구(百草溝)를 외국인의 거주 및 무역을 위하여 개방하고, 일본은 이들 지역에 영사관 또는 영사관 분관을 설치한다(제2조), ④ 청은 종래와 같이 도문강 이북의 개간지에 있어서 한인의 거주를 승인하고, 이 한인잡거구역(韓人雜居區域)의 경계는 별첨의 지도에 표시한다(제3조) 등이다.

청·일 간도협약은 그 동안 조선-청간에 문제되었던 간도의 영토적 권원을 밝혀 체결된 것이 아니다. 즉 간도를 볼모로 삼아 일본은 대륙침략정책을 한 단계 실현시켰고, 청은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고 대신 간도영유권의 확보라는 대가를 얻는 합의였다. 일본과 청 양국이 동삼성육안을 하나의 조약으로 이를 해결하지 않고 교묘하게 2개의 협약으로 분리하여 체결하였지만 그 근원이 동삼성육안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간도협약과 만주협약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이다.

7. 「청·일 간도협약」의 무효성

간도협약은 현재 중국이 간도를 자신의 영토라 보는데 기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상론할 필요가 있다. 청·일 간도협약이 무효인 이유로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1) 을사조약 관계에서의 간도협약의 무효

1) 을사조약의 불성립 또는 무효로 인한 간도협약의 무효

국제법상 을사조약이 조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하여 구속력을 가지는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조약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이 검토되어야 한다. 성립요건은 효력요건의 전단계로서 그 선결사항인 것이다. 즉 조약의 효력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것이 정상적으로 '성립'되었는가를 살펴보고, 그것이 성립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조약으로서 불성립한 것이어서 당연히 효력이 없고, 반대로 성립한 것이라면 그 다음에 그것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인가를 따지는 효력요건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그 조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이 아니면 그 조약은 성립은 하였더라도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유효하게 성립한 것이라면 정상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조약의 성립요건이란 조약이 성립하기 위해 구비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으로 일반적으로 ① 당사자, ② 목적, ③ 의사표시의 존재, ④ 조약성립절차의 완료의 네 가지를 든다. 특히 조약성립절차는 구체적으로 교섭-조약본문의 채택-조약본문의 인증-비준서교환⁴⁶⁾을 의미하는데, 교섭에서는 전권위임장문제가, 조약본문의 인증에서는 서명 또는 가서명의 문제가, 또 조약구속의 동의에서는 비준문제 등이 주요하게 검토될 사항이다. 다음으로 효력요건으로는 ① 당사자에게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원칙적으로 국가), ② 조약을 체결하는 기관에 조약체결권이 있을 것(국가원수), ③ 조약체결권자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부패, 사기, 강박 등), ④ 조약의 목적이 실현가능하고 적법할 것 등이 있다.

먼저 성립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을사조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약체결권자인 고종황제의 비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1905

46) 오늘날에는 비준서교환 후 유엔사무국에 당해 조약을 등록할 것까지를 조약체결절차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유엔체제하에서 비밀조약을 없애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이다.

년 11월 18일 을사조약이 불법적으로 조인된 직후인 11월 22일 고종황제는 황실고문인 H.B. Hulbert에게 일본의 만행을 알리고 고종황제 자신이 낯인(비준)한 일이 없어 무효임을 알리기 위해 친서를 주어 특사로 파견한 사실⁴⁷⁾과 또 1907년 6월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의해 이준(李儁), 이상설(李相高), 이위중(李瑋鍾)을 보내어 일본의 강점정책을 폭로 규탄하고자 시도한 사실⁴⁸⁾ 등 고종황제가 비준은커녕 국가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대외적인 활동을 추진하였을 뿐만이 아니라,⁴⁹⁾ 국내적으로는 정환직(鄭煥直), 정용기(鄭鏞基) 등에게 밀명을 내려 경상도에서 의병을 일으키도록 한 사실, 그리고 한국은 물론 일본에도 고종황제의 비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보면 을사조약은 대한제국의 조약체결권자인 고종황제의 비준이 없었으므로 이 조약은 성립도 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이 성립하지도 않은 을사조약을 근거로 일본이 대한제국을 대리하여 청과 체결한 간도협약은 당연히 무효이다.⁵⁰⁾

47) 고종황제는 Hulbert에게 “짐은 총칼의 위력과 강요아래 최근 한일간에 체결된 소위 보호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한다. 짐은 이에 동의한 적이 없고 금후에도 절대 아니할 것이다. 이 뜻을 미국 정부에 전달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구한말조약휘찬(1876-1945)』 상권, 입법참고자료 제18호, 1964, 76면.

48) 1906년 4월 러시아황제 니콜라이 2세가 제2회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초청장을 보내왔고, 고종황제는 이 기회에 국제사회에 주권수호외교를 전개하려 한 것이었는데, 이를 사전에 포착한 일본의 집요한 방해로 대한제국의 대표는 동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결국 이는 이준 열사가 자결을 통해서라도 국제사회의 관심을 획득하려 하였고, 또 이는 결국 일본의 강압으로 고종황제의 퇴위를 불러왔다.

49) 고종황제가 을사조약의 비준을 거부하고 주권수호외교를 전개한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한국교육사과, “고종황제의 주권수호 외교, 1994”; 김기석, “광무제의 주권수호 외교, 1905-1907”, 이태진 편저, 『일본의 대한제국 강점』(가치:서울), 1995, 213-291면; 도즈카 에쓰로, 김익한 역, “을사보호조약의 불법성과 일본정부의 책임”, 상계서, 312-339면.

50) 한편 을사조약이 체결된 직후의 국내 사정과 지식층의 인식을 알 수 있는 가치 있는 자료로는 상소문(上疏文)이 있다. 아직까지 을사조약의 체결과정이나 효력문제와 관련하여 당시의 상소문을 분석한 연구는 없었던 것 같다. 이 논문에서는 고종실록에 나타난 상소문들을 분석하였다. 을사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즉시 고종황제에게 수많은 상소문이 올려졌는데, 그 중에는 이 조약에 고종황제가 비준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다음으로 설사 을사조약이 성립하였다 치더라도 이는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조약의 효력요건에 관한 것이다. 을사조약의 체결경위를 살펴보면 이는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에 해당한다. 즉 일본은 러·일 전쟁에 승리하여 대한제국과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을 독점하게 된 일본은 적극적으로 대한제국 침략에 나서게 되었고, 이등박문(伊藤博文)은 주한 일본공사 임권조(林權助)와 주한 군사령관 육군대장 장곡천호도(長谷川好道)로 하여금 옆에서 시위하게 하고, 그들의 숙소인 정동 소재의 손탁 호텔에 참정대신 한규설 등 8명의 대신을 초청한 뒤 기탄없는 위협을 감행하였다.⁵¹⁾ 이와 같이 정동 손탁 호텔에서도 각의에서 이등박문이 일본헌병을 동원한 가운데 대한제국의 대신들을 개별신문 형태로 위협한 사실, 그리고 조인을 위하여 훔쳐온 대한제국 황제의 옥새를 외

이는 성립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한 것도 많다. 그 중에는 당시 국제법을 일컫는 ‘만국공법(萬國公法)’을 인용한 것도 있어 눈길을 끈다. 조약성립요건으로 황제의 비준이 없었음을 들어 성립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상소문의 예로는 권중현(權重顯), 강원형(姜遠馨), 안병찬(安秉瓚)의 상소문(이상 『高宗實錄』, 고종 42년(1905년) 11월 25일조), 조병세(趙秉世), 조병식(趙秉式), 이용태(李容泰), 박제황(朴齊璜), 윤병수(尹秉綬)의 상소문(이상 『高宗實錄』, 고종 42년 11월 26일조), 홍순형(洪淳馨), 이위래(李渭來)의 상소문(이상 『高宗實錄』, 고종 42년 11월 27일조), 조병식(趙秉式), 김종한(金宗漢)의 상소문(이상 『高宗實錄』, 고종 42년 11월 28일조), 최익현(崔益鉉)의 상소문(高宗實錄, 고종 42년 11월 29일조) 등이 있다.

- 51) 을사조약의 강박에 의한 체결과정에 대한 상세한 것은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상계서, 74-75면; 윤병석, “을사5조약의 신고찰”, 이태진 편저, 전계서, 주 54), 27-65면; 이태진, “조약의 명칭을 붙이지 못한 ‘을사보호조약’”, 상계서, 66-115면; 송정환, 『짜리로써야의 조선침략사개요』(료명인민출판사: 심양), 1982, 170면 참고. 그런데 소위 을사5적인 이완용, 박제순, 이지용, 권중현, 이근택이 공동으로 고종황제에게 을사조약 체결시의 전후 사정을 아뢰고 자신들을 처단하라는 자들을 법에 따라 징벌할 것을 청하는 상소문에 을사조약체결 당시의 정황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다만 이 상소문은 『고종실록』에 남아 있는데(『高宗實錄』, 고종 42년 12월 16일조), 우선 상소문에 일본측의 강박이 있었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을 뿐만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가감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고, 또한 고종실록은 순종실록과 함께 일본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당시 제국주의적 일본의 입장이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부대신을 위협하여 강제로 찍게 한 사실로 볼 때 을사조약은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다.⁵²⁾ 이와 같이 을사조약은 국가대표인 대신들에 대한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으로 무효이며, 이는 을사조약이 체결된 1905년 이전의 국제법에서 이미 확립된 것이다.⁵³⁾ 또 북한에서도 을사조약은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⁵⁴⁾ 결국 무효인 을사조약을 근거로 일본이 간도영유권문제를 대한제국을 대신하여 청과 처리한 간도협약은 무효이다.

2) 을사조약상의 보호권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서의 간도협약의 무효

또 전술한 바와 같이 비록 을사조약이 불성립 또는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효이긴 해도 일본측(또는 중국측)에서 현실적으로는 한일병합시까지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대한제국의 보호국으로

52) 전술한 바와 같이 을사조약 체결의 소식이 알려지자 그것이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라는 지적을 담은 상소문이 매우 많다. 예컨대 박기양(朴箕陽), 박봉주(朴鳳柱)의 상소문(이상 『高宗實錄』, 고종 42년 11월 21일조 참고), 이상설(李相高)의 상소문(『高宗實錄』, 고종 42년 11월 21일조), 강원형(姜遠馨), 안병찬(安秉贊)의 상소문(이상 『高宗實錄』, 고종 42년 11월 25일조), 조병세(趙秉世), 홍우석(洪祐哲), 박제황(朴齊璜), 윤병수(尹秉綬)의 상소문(이상 『高宗實錄』, 고종 42년 11월 26일조), 최재학(崔在學)의 상소문(『高宗實錄』, 고종 42년 11월 27일조), 민영환(閔泳煥), 조병식(趙秉式), 김종한(金宗漢)의 상소문(이상 『高宗實錄』, 고종 42년 11월 28일조), 최익현(崔益鉉)의 상소문(『高宗實錄』, 고종 42년 11월 29일조), 심순택(沈舜澤)의 상소문(高宗實錄, 고종 42년 11월 30일조), 윤치호(尹致昊)의 상소문(『高宗實錄』, 고종 42년 12월 1일조), 곽종석(郭鍾錫), 송병선(宋秉璿)의 상소문(이상 『高宗實錄』, 고종 42년 12월 5일조), 심순택, 이근명(李根命)의 상소문(이상 『高宗實錄』, 고종 42년 12월 7일조), 곽종석의 상소문(『高宗實錄』, 고종 43년 1월 2일조), 김석진(金奭鎭)의 상소문(『高宗實錄』, 고종 43년 1월 23일조), 신기선(申箕善)의 상소문(『高宗實錄』, 고종 43년 2월 12일조) 등이 있다.

53) 제국주의를 허용하던 당시의 국제법은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의 효력에 대하여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에 의한 조약과 국가 전체에 대한 강박에 의한 조약으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에는 무효이나 후자의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하였다.

54) 리나영, 『조선민족해방투쟁사』(조선로동당출판사:평양), 1958, 162-166면; 전영률·김창호·강석희, 『조선통사』 하(사회과학출판사:평양), 1987, 45-47면.

서 지위가 인정되었고,⁵⁵⁾ 간도협약을 포함하여 그 기간 동안 일본이 한국을 대신하여 행한 외교권 행사는 일용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정황⁵⁶⁾ 등을 근거로 을사조약이 비록 절차상 또는 형식상의 하자가 있지만 국제적으로 또는 한·일 양국의 추후실행에 의하여 치유되어 유효하다는 주장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일단 을사조약 자체가 유효하다고 가정하고 그럴 경우에 을사조약과의 관계에서 간도협약이 과연 유효한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을사조약 제1조는 “일본국 정부는 동경 소재 외무성을 경유하여 금후에 한국이 외국에 대하는 관계 및 사무를 감리지휘함이 가하고 …”이라 하고, 또 제2조 후문은 “한국 정부는 금후 일본 정부의 중재에 경유치 아니하고 국제적 성질을 유하는 하등 조약이나 약속을 아니함을 약함”이라 하였는데, 여기서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업무를 ‘감리지휘’할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권한은 조약체결의 경우 조약체결을 위한 교섭권만을 의미할 뿐 조약체결권은 여전히 대한제국에게 있다. 따라서 간도협약이 일본이 을사조약을 근거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대리행사하여 체결하고자 한 것이라면 대한제국의 이름으로 체결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청·일 간도협약은 청의 흥정외무부상서 회관대신 양돈언(欽命外務部尙書 會辦大臣 梁敦彥)과 일본의 특명전권공사 이집원언길(特命全權公使 伊集院彦吉)간에 체결되어 일본이

55) 즉 고종황제가 황실고문 H.B. Hulbert에게 보낸 지시에 의하여 을사조약에 대한 사실이 세계 각국에 알려지자 1906년 1월과 2월에 각각 영국과 프랑스에서 신문과 논문으로 그 무효가 주장된 바 있었다.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서, 전게서, 주 52), 76면 참고. 그러자 이에 대하여 일본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가 1905년의 한일협약을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벨기에, 덴마크 및 중국의 정부에 통고함에 있어서 첨부한 각서와 선언서>를 통하여 일본의 대한제국에 관한 보호권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보호관계를 기정사실화 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외교문서들의 전문은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서, 상계서, 80-86면.

56) 예컨대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간도채주한인이 보호를 의뢰한 것도 그 예의 하나이며, 나중에 청이 대한제국이 아닌 일본의 외교문서들의 전문은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전게서, 주 52), 80-86면.

직접 이 조약의 당사국이 된 것인데, 을사조약에 의하여 일본이 가지는 외교교섭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무효이다.

둘째, 일본은 간도협약으로 그 동안 대한제국이 계속하여 주장하여 온 간도영유권을 청에 넘겨주었는데 이것은 을사조약에 의한 보호국의 목적과 한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무효이다. 을사조약 제1조에서 대한제국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한 것은 법의 건전한 상식이나 법의 일반원칙에 의할 때 대한제국의 이익의 보존, 이용 또는 개량하는 것에 한할 뿐이며,⁵⁷⁾ 대한제국의 국가구성의 본질적 요소인 영토를 처분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⁵⁸⁾ 즉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은 보호관계에 내재하는 보호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보호국의 주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또 영토는 국가구성의 본질적 요소이고 따라서 영토의 처분은 국가주권의 본질적인 사항의 처분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피보호국의 동의와 같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보호권의 범위를 넘은 것이어서 무효이다.⁵⁹⁾

(2) 제3국을 위한 조약의 법리의 적용가능성

한편 청·일 간도협약을 제3국에 대한 조약으로서 대한제국에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청·일 간도협약을 을사조약과는 전혀 관련짓지 않고 그 자체로서 제3국인 대한제국에 효

57) 김평기, “청일간도협약의 무효”, 『고시계』 1985년 9월호, 143면.

58) 특히 을사조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1905년 11월 16일 일본 공사 林權助가 대한제국 외무 대신 박제순에게 보낸 공문에서 대외관계를 일본정부에 담임하게 하는 조약을 체결하는 사유로서 대한제국의 '황실 및 영토의 안전'을 주장(외무부, 『구한말외교문서』 제7권, 1960, 814-815면)하고 있는 것에서 일본은 대한제국의 영토의 일체성을 해하지 않을 내재적 제한이 부과되어 있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신각수, “국경분쟁의 국제법적 해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200면.

59) J. Crawford, *The Creation of States in International Law*(Clarendon Press: Oxford), 1979, pp. 207-208.

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조약의 제3국에 대한 효력문제이다. 국제법상 “서약은 제3국에게 해롭게도 이롭게도 하지 않는다(*pacta tertiis nec nocent nec prosunt*)”는 원칙에 의하여 조약은 당사국에게만 효력이 있을 뿐 제3국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이 오래 전부터 확립되어 있다.⁶⁰⁾ 따라서 청·일 간도협약은 제3국에 대한 조약의 법리로도 대한제국이나 이를 승계한 한국에 대하여 유효한 것으로 주장될 수 없다.

(3)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에 의한 간도협약의 무효

제2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간도협약과 을사조약을 포함하여 일본이 대륙침략정책을 수행하면서 체결한 모든 조약과 이권 및 특혜를 무효 또는 원상회복토록 하는 여러 조치들이 취해졌다. 이러한 조치들로는 1943년 12월 1일 카이로선언, 8월 14일 포츠담선언, 9월 2일 일본의 항복 문서 및 1952년 4월 28일의 중·일 평화조약 등이 있다.

카이로선언에서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도취한(*stolen*) 모든 지역’이란 문맥상 1895년 청·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제국주의적 침략정책에 의하여 탈취한 모든 지역을 말하는 것이며,⁶¹⁾ ‘반환’은 원상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중·일 평화조약 제4조에는 “중일 양국은 전쟁의 결과

60) H. Kelse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Holt:New York), 1967, p. 484; M. Akehurst, *A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George Allen:London), 1970, p. 163; G. von Glahn, *Law among Nations*, 3rd. ed., (MacMillan:New York), 1976, p. 438; W. L. Gould, *An Introduction of International Law*(Harper:New York), 1957, p. 333; W. W. Bishop, *International Law, Cases and Materials*, (Little Brown:Boston), 1953. pp. 110-112; I. Sinclair,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2nd ed., (Manchester University Press: Manchester), 1984. p. 98.

61) 노계현, 전제서, 주 3), 104면.

로서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 협약 및 협정은 무효(null and void)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1941년 12월 9일 이전’이란 일본이 중국에 대하여 침략적 행위를 시작한 때부터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때까지의 전 기간을 통하는 것이다. 이 기간 체결된 ‘모든 조약, 협약 및 협정’을 중일 양국은 무효로 하였으므로 1909년에 체결된 간도협약도 필연적으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시 동시에 체결되고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청·일 만주협약은 무효로 되어 과거 일본이 가졌던 모든 이권은 실효되었으나, 청·일 간도협약만은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되어 오늘날 중국은 간도협약을 간도가 자신의 영토라는 주장의 가장 중심적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8.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도는 우리 땅이다. 백두산정계비가 설치되기 전에는 서간도와 동간도가 모두 조선의 영토였다. 그러나 백두산정계비의 ‘서위압록 동위토문’에 의하여 서간도는 청의 영토로 되었으며, 동간도는 여전히 조선의 영토로 남아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과거 청은 조선이 속국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그리고 오늘날 중국은 동북공정으로 동간도도 자신의 영토라 하고 이를 기정사실화 하려고 하고 있다.

요컨대 백두산정계비의 효력을 인정한다고 할 때도 애당초 정계의 기준을 분수령을 하기로 하였고, 백두산에 올라 답사하여 분수령을 찾았고, 그 분수령이 압록과 토문의 분수령이었고,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세운 비석에도 압록과 토문으로 경계를 한다는 것 외에도 그 분수령상에 비를 세운다는 것을 명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 잠류부분에 토퇴나 석퇴를 쌓아 국경표식을 한 것도 토문강이다. 여기서 토문강은 송화강의 지류

인 토문강이며, 두만강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점이 백두산정계비의 법적 효력을 인정할 경우에 그 법적 판단의 요체인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백두산정계비 이후에 제작된 서양의 고지도들에서는 통일적으로 동간도 뿐만 아니라 서간도도 조선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이 백두산정계비의 법적 효력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당한 법적 권원의 발견과는 별개이면서 오히려 이러한 작업을 무의미하게 하는 문제가 있는데 국제법상의 시효문제가 그것이다. 시효제도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동안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사실에 근거하여 새로이 정당한 권원을 부여하는 제도인 것이다. 실정국제법상으로는 시효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칙이 성립되어 있지 않지만 학설과 판례에서는 그것이 인정되고 있다. 또 평온 공연한 점유가 얼마나 계속되어야 하는가, 즉 시효완성기간에 대해서는 실정국제법은 물론 시효 자체를 인정하는 학설과 판례에도 구체적으로 기간이 정해진 바는 없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간도영유권에 대하여 시효를 중단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조치, 즉 중국의 간도영유에 대한 이의제기와 한국의 간도영유권 주장이 늦으면 늦을수록 중국은 유리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한국은 간도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 한번 못해보고 간도를 중국의 땅으로 넘겨주는 꼴이 될 것이다. 이 경우 우리 역사에 있어서 책임질 자가 누구인가? 한국 정부의 조속한 조치가 요구된다.

(원고투고일 : 2005. 7. 22, 심사완료일 : 2005. 8. 9)

주제어 : 간도, 간도 영유권 분쟁, 간도협약, 만주협약, 백두산정계비

<ABSTRACT>

A Study on the Territorial Dispute over *Gando* between Korea and China

Loh, Yeong-don

The territorial disputes over *Gando* between Korea and China was taken place in 1883. It was focused on the interpretation on which is the 'Tomoon(土門)' River on the inscription of the stone monument set up on the Mountain *Baekdu* in 1712. China insisted that the 'Tomoon' is the same river to 'Duman(豆滿)', but Korea asserted that the 'Duman' is one and 'Tomoon' is another which is a tributary of 'Songhua(松花)' River. So the territorial dispute over *Gando* area, the eastern region of the 'Tomoon' which is a tributary of 'Songhua' and the northern region of 'Duman' was occurred.

Korea and China had talks two times in 1885 and 1887 each to negotiate a settlement of the dispute but failed to reach an agreement. In this circumstance Japan invented into the dispute, based on the 1905 Convention between Japan and Korea for Japan to establish protectorates over Korea. Japan disposed of *Gando* as a territory of China with the 1909 Agreement between Japan and China recognizing the *Duman* River as the Boundary between China and Korea(hereinafter "*Gando* Convention") which was concluded at the same day to the Agreement between Japan and China with regard to Railways and Mines in *Manchuria*(hereinafter "*Manchuria* Convention"), which they were in exchange of one for the other.

But the *Gando* Convention does not affect Korea since it was concluded

between Japan and China and Korea was, as third state, clearly stranger to that Convention. Furthermore, if not, in the legal aspection the 1905 Convention between Japan and Korea to establish protectorates over Korea was not concluded because the Emperor *Gojong* of Korea who has the ratification power of the Convention, have never ratified it and carried out a policy to declare it invalid to the World. In a short, since the 1905 Convention has not come into existence in legal sense, the *Gando* Convention based on the 1905 Convention, whereby Japan regarded as having the power to conclude treaties for Korea at the time, is null and void. And, if not again, the *Gando* Convention to dispose of *Gando* as a territory of China was exceeded Japan's authority laid down in the 1905 Convention itself. In Addition, in the process of termination of World War II, the treaties concluded between Japan and China, including *Gando* Convention and *Manchuria* Convention, declared null and void. As a conclusion, the legal status of *Gando* is not the territory of China and is, at least, in the state of territorial dispute between Korea and China.

Key Words : *Gando*, Territorial Dispute between Korea and China over *Gando*, Agreement between China and Japan recognizing the *Duman* River as the Boundary between China and Korea(間島協約), Agreement between China and Japan with regard to Railways and Mines in *Manchuria*(滿洲協約), Stone monument set up on the Mountain *Baekdu*